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,

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·성희롱 관련 신고 중

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전체의 11.3%를 차지하며,

강제추행(55.9%)과 성희롱(16.8%)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
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○ 불법촬영 행위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주로 발생한다고

인식되어 왔으나, 실제로는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사생활

보호가 절실한 다양한 취약 공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
실정입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에 ‘화장실’로 한정되어 있던 용어를
‘화장실 등’으로 확대하고, 그 정의에 탈의실, 샤워실,
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포함함으로써
불법촬영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.

이를 통해 학교 내 사생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
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